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5
----------	------

제출일자 : 2015. 5.

제 출 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955호, 2014.12.31.)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축소하며, 문화재 보호시설구역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축소(안 제3조)

- 현행 면제 ⇒ 2016.12.31.까지 100분의 75 면제,

2017.1.1.부터 2018.12.31.까지 100분의 50 면제

나.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4조)

다. 인용법령 변경(안 제12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55조제2항
- (2) 「문화재보호법」 제27조
-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규제심사 : 이상 없음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3. 27. ~ 2015. 4. 17.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 :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경감(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경감)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100분의 50 경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
2.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 :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경감(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경감)</u> <u>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100분의 50 경감</u>
<p><u>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u></p>	<p><u>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u> <u>2.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u>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u>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정한다.</p> <p>1. ~ 2. (생략)</p>	<p>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u>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정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